

2016헌마738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등 위헌확인

의 견 서

청 구 인 권가현 외 2

이해관계인 방송통신위원회

이해관계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 종

담당변호사 강신욱, 장준영, 강현정,

이민영, 강지현



헌법재판소 귀중

전화(직통) : 02-316-4059 (변호사 강신욱), 02-316-1518 (변호사 강지현)
e-mail : sokang@shinkim.com (변호사 강신욱), jhykang@shinkim.com (변호사 강지현)
팩시밀리 : 02-316-0357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의 견 서

사 건 2016헌마738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가현 외 2

이해관계인 방송통신위원회

위 사건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들어가며

본 의견서에서는 기존에 제출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내용 중 부연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에 따라 차단되는 음란정보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2019.10.2.자 의견서 11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로 구성됩니다.

추가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한 정보가 포함되며, 이와 더불어 통신사업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네트워크 상에 유통되는

음란정보를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음란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¹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신사업자로서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네트워크 상에 유통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음란정보를 수집·검증하여 유통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음란정보를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따라서 통신사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네트워크 상에 음란정보가 유통될 경우, 비록 통신사업자가 직접 해당 음란정보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통을 방조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음란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한편, 통신사업자 모니터링을 통해 분류된 음란정보의 선정기준은 청소년보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규정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6호)에서 제시한 음란정보 판단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2. 개별 심의 기준

-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 다. 동물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집단 성행위, 근친상간, 가학·괴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성매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 윤리를 해손할 우려가 있는 것
-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해손할 우려가 있는 것
-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마.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파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음란정보만으로는 하루에도 수십만건씩 세로운 정보가 생성되는 인터넷 상에서 범람하는 음란정보로부터 청소년을 충분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 통신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신사업자가 ‘음란정보 등 유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청소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상 음란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보다 두터운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피해자의 60% 이상이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될 정도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참고자료 19-1). 더욱 심각한 것은 위 범죄에 가담한 이들 역시 상당수가 10대였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의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참고자료 19-2).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이 익숙한 청소년에게 인터넷은 음란정보를 접할 수 있는 주요한 창구가 되며 청소년이 지지른 성범죄의 상당수 역시 SNS를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청소년에게 인터넷상의 음란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아이폰에 대한 차단 앱 존재 여부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에 기재한 ‘통신사별 차단 앱 제공현황’(2019.10.2.자 의견서 2면)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제공되는 앱으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OS기반의 앱(T청소년유해차단, KT자녀폰안심프리, U+자녀폰지킴이)을 소개하였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용 앱에서 유해차단 기능에 대한 접근성 권한을 허용하고 있어 크롬을 비롯한 다양한 브라우저에서의 유해 접근 여부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으나, 애플은 iOS 앱에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유해차단 기능에 대한 접근성 권한 활용 방식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폰의 경우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앱은 별도로 없으나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에서 개발한 사이버가디언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가디언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에 해당합니다.

4. 각 차단 앱 별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각 차단 앱 별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종류는 각 차단 앱 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자료 20-1,20-2,20-3,20-4,20-5). 각 차단 앱은 본인 동의 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통신사 및 알뜰폰 사업자는 최초 가입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개인정보 등 이용 동의를 법정대리인에게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언급된 서비스 이용기록, 웹사이트 접속내역, 서비스 이용 중 기록되는 네트워크 정보 등은 IP주소, URL주소 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 의견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해매체물 차단 및 인터넷 서비스 연결에 필요한 기본적

인 정보(IP주소, URL, 포트번호 등)에 해당합니다(2019.10.2.자 의견서 8면). 예컨대 http 통신을 할 때 이용자가 입력한 URL(www.ooo.com/123.htm) 정보와 통신사업자 음란정보 데이터베이스 상의 차단목록을 기계적으로 비교하여 음란정보가 포함된 사이트인 경우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URL과 같은 서비스 이용기록 등의 정보는 유해매체물 차단 및 인터넷 서비스 연결에 필요한 정보일 뿐 청소년이 차단대상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공간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접근한 콘텐츠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특히 차단은 음란정보 데이터베이스와의 URL 비교와 같은 자동적, 기계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내역을 직접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플명	수집하는 개인정보
T청소년유해차단	- 회원 휴대폰번호, 회원 보호자 휴대폰번호, 회원 유해콘텐츠 접속시도, 실행시도 리스트 - (자동 수집 항목) UDID,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등
KT자녀폰안심프리	- 이름, 휴대폰번호, 계약정보(가입,해지,변경,일시정지), 단말기 Mac Address, 부모 이름 및 핸드폰번호, 웹사이트 접속내역
LGU+자녀폰지킴이	- 이름, 휴대폰번호, 단말기 Mac Address, 아이디, 비밀번호, 부모 이름/핸드폰번호/이메일주소, 계약정보(가입/해지/변경/일시정지), 서비스 이용 중 기록되는 각종 네트워크 정보(URL)
엑스키퍼 가드	- (필수 수집 항목) 아이디(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서비스 적용 대상자(자녀)의 성명, 성별, 출생년도, 통신사, 휴대폰번호 - (자동 수집 항목) IP Address,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사이버가디언	- (필수 수집 항목)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자녀) - (선택 수집 항목) 이메일 - (자동 수집 항목) IP 주소 및 방문 일시 등 로그기록 등

5. 통신사 기본앱(T청소년유해차단, KT자녀폰안심프리, U+자녀폰지킴이)의 설치가 의무사항인지 여부

T청소년유해차단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각 대리점에서 청소년의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 내용 등을 안내하고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이 설치 동의 시 휴대폰에 T청소년유해차단 서비스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가입자(청소년)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자에 앱 설치를 위한 URL을 함께 수록해 발송하고 있습니다.

KT자녀폰 안심프리의 경우 만 19세 미만 고객에 대하여 휴대폰 개통 이후 설치안내 문자를 통해 설치 URL이 제공되며, 해당 URL에 접속하여 차단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단 앱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3일 주기로, 통신 두절이 된 경우에는 7일 주기로 가입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설치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LGU+자녀폰지킴이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점에서 가입 계약 체결 시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점에서 법정대리인에게 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여부 확인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초 가입 시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앱 가입 및 설치 안내와 관련한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가입 1개월 후 별도로 법정대리인에게 앱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의견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글 패밀리링크, 모바일펜스 등은 이 사건 심판대상의 규율을 받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닙니다(2019.10.2.자 의견서 2면). 통신사업자가 이동

통신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파수 할당을 통해 전파자원을 배분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²,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는 구글 패밀리링크, 모바일펜스 등과 같은 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제공을 위해 별도로 주파수를 할당받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뜰폰사업자는 통신사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도매제공받아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라는 점에서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56호) 제3조 역시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재판매사업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파수를 사용하는 통신사업자나 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도매제공받아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알뜰폰사업자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적용을 받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6. 법정대리인 휴대전화 번호 수집의 방법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9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체결 후 차단수단 삭제 또는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 대상 사실의 통지 의무에 따라 수집하고 있습니다.

² 현재는 폐지된 법령이지만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었던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정보통신부령 제232호) 제3조를 살펴보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로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라고 규정한바 있습니다.

SKT의 경우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와 같이 청소년의 이동전화 가입 신청 단계에서 법정대리인의 휴대폰 번호 수집 동의를 받고 있으며, 이동전화 계약서를 통해 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2019.10.2.자 의견서 4면). 이와 마찬가지로 KT와 LGU+, 알뜰폰사업자 역시 청소년 가입자의 가입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 및 고지를 위해 활용하는 것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의 내용에 따라 수집, 이용, 제공, 처리위탁하는 것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참고자료 20-1, 20-2, 20-3, 20-4, 20-5).

그림 1 SKT 청소년 가입신청서 모바일 발췌

고객정보 / 요금납부	수신방법 <input type="radio"/> Bill Letter <input type="radio"/> OT world 확인 (온라인) <input type="radio"/> 문자 <input type="radio"/> 이메일() * 요금납부 방법 <input type="radio"/> 은행/카드 자동납부 <input type="radio"/> 예금주명(카드주명) <input type="radio"/> 입금전용계좌 <input type="radio"/> 지로 온행(카드사) 예금주명(카드주명) 이동전화번호 <small>본인(예금주/카드주)은 본 이용요금에 대해 별도의 품질없이 개인/카드에서 자동인출(결제)이 이루어지거나(결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small>					<input type="radio"/> 우편요금안내서 <input type="radio"/> 미발송 <small>(간접우편기간 날짜)</small> <small>(가상납부신청결과안내 및 확인)</small>	
						<input type="radio"/> 예금주/카드주(대리인) (지역/전화)	
						<small>* 법정대리인 이름</small> <small>* 신청고객과의 관계</small> <small>* 이동전화번호</small> <small>* SKT</small> <small>* 법정대리인 생년월일</small>	
						<small>법정대리인 생년월일</small>	
						<small>법정대리인</small>	

그림 2 KT 청소년 가입신청서 모바일 발췌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성명 <small>법정대리인 생년월일 </small> <small>법정대리인 연락처 </small> <small>법정대리인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휴대폰 문자로 동의합니다.</small> <small>법정대리인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휴대폰 문자로 동의합니다.</small> <small>법정대리인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휴대폰 문자로 동의합니다.</small> <small>법정대리인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휴대폰 문자로 동의합니다.</small>	
<small>법정대리인의 관계 </small> <small>법정대리인 성별 ○ 남 ○ 여</small>	
<small>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KT mobile 서비스 이용 신청에 동의합니다.</small>	
<small>서명/인</small>	

그림 3 LGU+ 청소년 가입신청서 모바일 발췌

법정대리인	<small>본인은 상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당해 미성년자가 LG유플러스의 5G/LTE/CDMA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또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small> <small>○ 상기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귀여가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small> <small>○ 상기 미성년자와 귀여가 '서비스' 이용 개인 및 단말기 대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성년자 및 기업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기업에 동의하며 서비스 기업 및 일부금 등 차운에 대하여</small> <small>'동의'를 체크하는 것을 하겠습니다.</small> <small>○ 미성년자와 단말기를 일부금에의 방법으로 구매하는 경우 귀여가 일부금 대전에 기여하여 본인을 주체무자로 하여 서울보증보험(주)과 신용보증기금을 제경하고 이에 따라 일부금수수료가 청구되며, 보증보험사 상환채무가 부과되며</small> <small>급 경우 경기지방 신청불상구제로 통보되는 경우 등입니다.</small> <small>○ 귀여가에 경기, 본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의 개인(신원정보), 고장식별번호, 주소를 신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내용에 따라 수정·이용·제공·처리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small> <small>○ 본인은 법정대리인과 반드시 함께 생길 경우 저작권에 LG유플러스에 알려겠습니다.</small>				
	<small>성명</small> <small>생년월일</small> <small>관계</small> <small>연락처</small>				

그림 4 SK텔링크 7모바일 청소년 가입신청서 발췌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이름	*연락받을 전화번호	-
	*법정생년월일	*신청고객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청소년 고객이 오셀링크와 서비스 이용 계약相关内容에 동의함을 확인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협약 및 협약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록에 등재합니다. • 협약은 서비스 이용 중 기록된 정보와 함께 서비스 이용 내역 등으로 정보수집과 함께 제공되는 개인정보를 포함합니다. • 협약은 협약과 같은 내용을 주제로 자주 묻는 보통법률에 기반하여 구조화된 형식으로 정한 경우 각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이나 통지방법 등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적용합니다. • 협약에 등재된 법정대리인은 향후 소비자와 법정대리인의 입증서류 없이 번호변경이나 계약변경을 할 경우 신설 수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번호변경은 자체 없이 화면에 알리겠습니다. • 협약은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판매, 제공하는데 등에 의합니다. • 신청서 하단의 청소년 고객 이용 만8세에 대하여 내용 설명을 듣고 속히하장동을 확인합니다. 		
유해정보 차단	유해 네트워크 차단	<input checked="" type="radio"/> 네트워크 차단(무료)	※신기증신사업법 제32조 7 청소년유해로 등록 차단에 의거, 만 14세 미만 고객은 의무적으로 차단기제입니다.
	유해 앱 차단	<input type="radio"/> 스마트폰 <input type="radio"/> 액스기미 카드(무료) <input type="radio"/> 스마트보안판(무료) <input type="radio"/> 액스기미 모바일(유료) ○ 기타 ○ 피처폰	
* 청소년의 이용건화 기록 시 일수적으로 유해정보차단수단에 가입하여야 하며 차단장치의 종류 및 고지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차단장치 설치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고객지원팀

그림 5 KT 앱모바일 가입신청서 발췌

7. 유해정보차단 부가서비스 해지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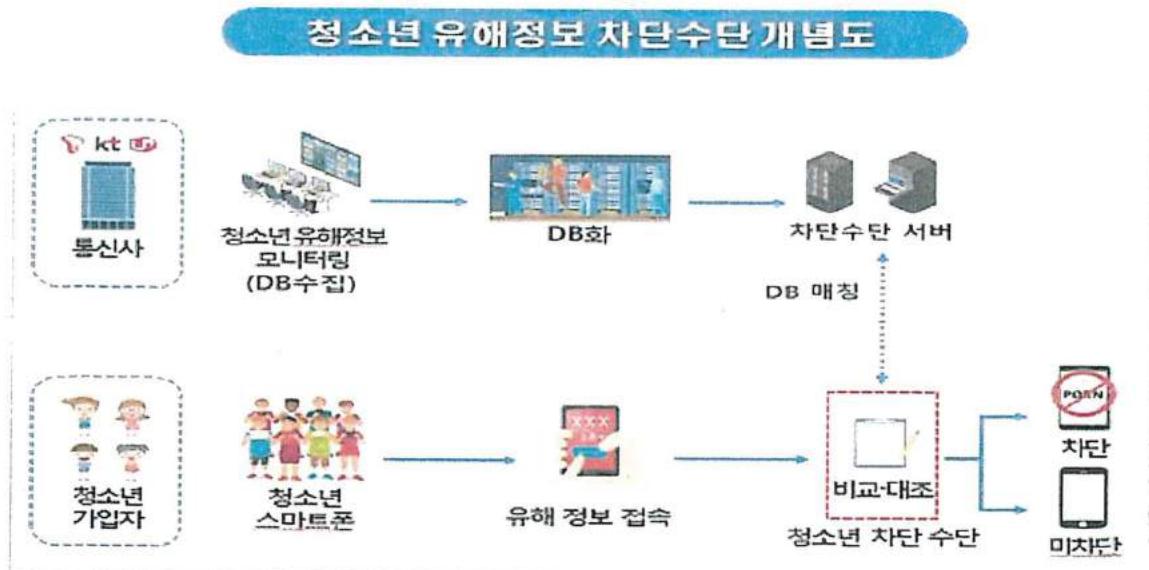
기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SKT와 LGU+에 대한 부가서비스 해지 안내에 대해서만 설명드렸으나(2019.10.2.자 의견서 참고자료 7-1,7-2), KT와 알뜰폰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가서비스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해지 방법으로는 고객센터에 법정대리인이 직접 연락하거나 대리점을 방문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8. 차단 앱 15일 이상 미작동 시 법정대리인 통지 기능의 작동 방식

SKT의 경우 차단 앱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차단 앱 간 통신을 하여 자동으로 일 1회 이상 동기화를 하고 있으며, 매일 동기화 시점을 기준으로 통신이력이 15일이 경과된 사용자를 취합해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KT와 LGU+ 역시 자녀폰의 앱과 회사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주기적으로 통신을 하게 되어 있어 통신 기록을 근거로 마지막 통신시간 기록이 일정기간 지나게 되면 대상 사용자를 취합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단 앱이 삭제될 경우 동기화 내지 데이터베이스 서버와의 통신이 불가능하여 동기화·통신 내역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미기록 상태가 15일 이상이 되면 차단 앱이 15일 이상 미작동 되었다고 판단하여 서비스 가입 당시 수집하였던 법정대리인 휴대전화 번호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9. 차단수단 개념도의 출처

차단수단 개념도는 다음과 같으며, 개념도는 통신3사의 설명내용을 근거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작성한 도식입니다.



참 고 자 료

- | | |
|--------------|---|
| I. 참고자료 19-1 | 고희진 기자, ‘n번방·박사방’ 등 피해자 60% 이상 10대 청소년…경찰, 소지자 추적 연말까지, 경향신문, 2020.05.28.자 기사 |
| I. 참고자료 19-2 | 유병돈 기자, n번방 진짜 주인은 청소년이었다…12세 초등생 까지 가담, 아시아경제, 2020.05.26.자 기사 |
| I. 참고자료 20-1 | T청소년유해차단 개인정보처리방침 |
| I. 참고자료 20-2 | KT자녀폰안심프리 개인정보처리방침 |
| I. 참고자료 20-3 | LGU+자녀폰지킴이 개인정보처리방침 |
| I. 참고자료 20-4 | 엑스키퍼가드 개인정보처리방침 |
| I. 참고자료 20-5 | 사이버가디언 개인정보처리방침 |
| I. 참고자료 21-1 | SKT 청소년 가입신청서 모바일 |
| I. 참고자료 21-2 | KT 청소년 가입신청서 모바일 |
| I. 참고자료 21-3 | LGU+ 청소년 가입신청서 모바일 |
| I. 참고자료 21-4 | SK텔링크 7 모바일 청소년 가입신청서 |
| I. 참고자료 21-5 | KT엠모바일 가입신청서 |

2020. 7. 15.

이해관계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욱



담당변호사 장준영



담당변호사 강 현 정



담당변호사 이 민 영



담당변호사 강 지 현



헌법재판소 귀중